



8월 21일(화) 14:00 이후 사용

비 고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 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1과

과장 김호석, 감사관 문영한
(02-3703-2051, 205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장 송준현, 사무관 김병도
(044-202-3210, 3204)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운용 실태 점검 19,306건 부정수급 적발

- △관리·점검 시스템 개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제보자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 3. 26 ~ 5. 17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 운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voucher)] 제도

: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종

○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역시 계속하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 '15년 1조897억원 → '16년 1조3,203억원(↑21.2%) → '17년 1조4,888억원(↑12.8%) → '18년 1조6,334억원(↑9.7%)

□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 최근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 * 전체 제공기관 12,437개('17년) 중 최근 1년 내 점검한 기관을 제외하고 '17. 10월부터 '18. 2월 사이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자료 등으로 선정한 의심기관
 -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6,919건, 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① 첫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② 둘째,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도 운영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바우처 시스템상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이 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③ 셋째,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횡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보고서

[붙임] 점검결과 보고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2018. 8. 21.



국 무 조 정 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I. 점검배경

-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15년 1조897억원 → '16년 1조3,203억원(↑21.2%) → '17년 1조4,888억원(↑12.8%) → '18년 1조6,334억원(↑9.7%)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 추세*이고, 매년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 합동점검 적발실적 '15년 103백만원 → '16년 220백만원(↑113%) → '17년 486백만원(↑121%)

** 합동점검(복지부, 지자체, 정보원) 연 2회(상·하반기), 총 12,437개 기관 중 약 80~100개에 불과

- 또한,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하여 이루어지는 허위·부당 청구 등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선제적 관리강화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II. 점검결과

□ 점검개요

- 기 간 : '18. 3. 26.(월) ~ 5. 17.(목), 8주간
- 대 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개소
 - 합동점검* 38개소, 자체점검** 401개소

* (합동점검) 15개반 50명(부감단 4인, 복지부, 사·도 및 시·군·구, 정보원 각 1인 이상)

** (자체점검) 17개 사·도 153개 시·군·구 대상으로 153개반 306명(사·도, 시·군·구 등 2인 이상)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별 점검대상 현황 】

구 분	점검 기관수	노인 돌봄	산모 신생아	지역 사회	가사 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재활	언어 발달	부모 상담
계	439	26	22	57	3	274	52	3	2
합동점검	38	1	3	9	2	16	7		
자체점검	401	25	19	48	1	258	45	3	2

주) 지역별 : 경기(85), 서울(78), 부산(36), 경남(31), 대구(30), 경북(25), 광주(22), 충남(20), 인천(19) 순

○ 선정기준

- 최근 1년('17.2~9) 내 점검기관을 제외한 '17.10 ~ '18.2월까지 기간 중 부정수급 의심 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공적정보 연계 등을 통해 의심 기관 43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이상결제 모니터링(406), 공익제보(18), 공적정보 연계(15)

【 그간 추진경위 】



□ 점검결과

- 총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265개 기관(60%)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에 부정수금액 394백만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8개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72백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70백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적발 단서별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결제 내역, 공익제보건, 공적정보 연계* 자료 중 공익제보건과 공적정보 연계 자료를 통한 평균 적발금액(약 7~8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결제 : 일괄결제, 연속결제, 심야결제 등 결제원칙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결제내역

공익제보 : 유선 및 온라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등을 통한 제보

공적정보 연계 : 사망의심, 해외출입국, 장기입원 등의 공적정보 연계자료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별 적발 현황 】

구 분	점검대상 (개소)		적발건수		적발금액 (백만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439	100%	19,306	100%	394.1	100%
노인돌봄서비스	26	5.9%	1,687	8.7%	27.1	6.9%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22	5.0%	1,774	9.2%	21.5	5.5%
지역사회서비스투자	57	13.0%	6,919	35.8%	170.4	43.2%
가시간병방문지원	3	0.7%	58	0.3%	0.4	0.1%
장애인활동지원	274	62.4%	7,476	38.7%	172.0	43.6%
발달재활서비스	52	11.8%	1,364	7.1%	1.5	0.4%
언어발달지원	3	0.7%	-	-	-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2	0.5%	28	0.1%	1.1	0.3%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경우 주로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초과결제나 허위결제로 적발

【 적발 단서별 적발 현황 】

구 분	점검대상<A> (개소)		적발건수		적발금액<C> (백만원)		평 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적발건수 (B/A)	금액천원 (C/A)
계	439	100%	19,306	100%	394	100%	44	898
이상결제	406	92%	12,160	63%	187	47%	30	406
공익제보	18	4%	5,710	30%	105	27%	317	5,858
공적정보	15	4%	1,436	7%	102	26%	96	6,793

III. 개선방안

1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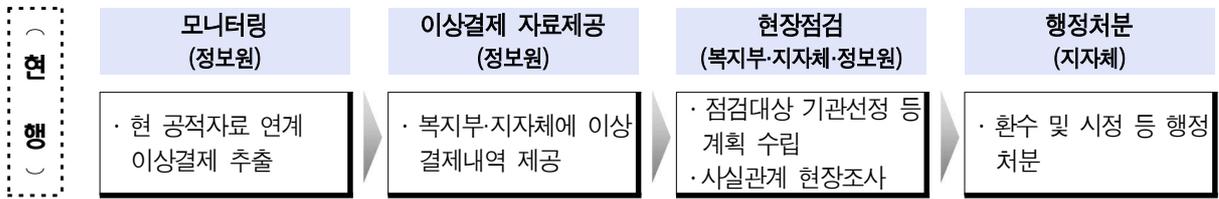
① 공적정보 연계확대 및 온라인심사 도입

○ (문제점) 현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공적정보 5종이 연계* 되어 있으나 다양화 되는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확대 연계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현장중심의 적발방식으로는 점검인력 부족과 시간상 제약으로 실효적인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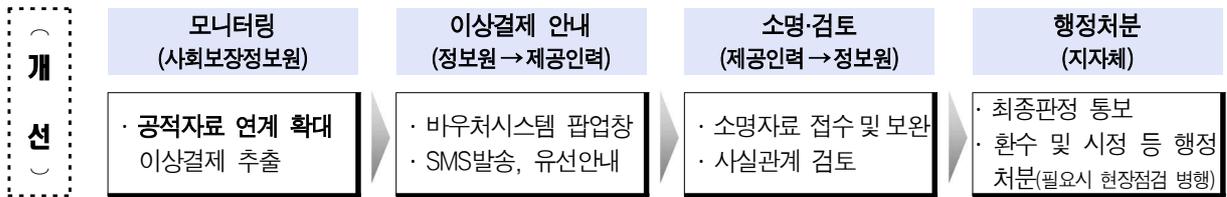
* (5종) 사망의심자, 출입국, 장기입원환자, 장기요양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정보

** '16년 현장점검을 통해 환수 및 처분조치 약 845건



- (개선방안) 기존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16년 기준 이상결제 추출 건에 대한 15,648건 온라인 심사로 처리가능(추정)



② 이상결제 탐지 제고를 위한 지리정보(GIS) 활용

- (문제점) 이상결제 유형인 “연속결제*”의 경우, 모니터링 인력이 직접 지도 검색을 통해 부정수급 개연성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추출 수행률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서비스 제공인력이 A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후 B 이용자의 서비스 시작을 5분 이내에 결제한 경우 B 이용자에게 이동하는 거리, 시간 등을 확인하여 검증

** '17년 기준 연속결제 11만 건 중 모니터링 인력이 5,814건(5.2%)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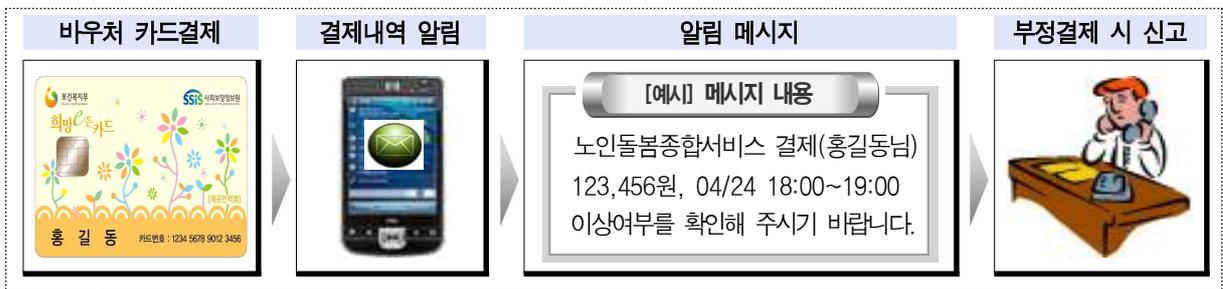
- (개선방안)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GIS)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를 자동추출* 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7년 기준 11만 건 중 49,046건(44.6%) 수행 가능(추정)



③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 (문제점) 제공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제공 없이 정상적인 시간에 임의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없고, 허위·부당 청구라도 모니터링에 이상결제로 확인되지 않아 처음부터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이용권(바우처) 카드결제 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으로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하여 이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부정한 결제를 예방하겠습니다.



④ 이상결제 방지를 위한 경고시스템 도입

- (문제점) 이상결제를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도, 바우처 카드분실·훼손, 미소지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소급결제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어 점검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민원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에서 소급결제를 할 경우 경고알림*으로 경각심을 부각시켜 무분별한 소급결제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소급결제 기준 및 의무사항(제공기록지 작성 등)과 우선 점검대상으로 허위청구 시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단말기 음성, 화면표시, 진동 등으로 경고알림



① 지자체 현장점검 내실화

○ (문제점) 지자체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점검자의 숙련도와 전문성 차이*에 따라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필요한 기초자료, 질문사항 등 예비조사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나 점검자에 따라 정보 확인 및 수집 등에 수준차이 발생

○ (개선방안) 현장점검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 등을 전자마우처 시스템에서 한 화면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점검의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관련 지침 및 점검 매뉴얼, 제공기관 등록정보,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이상결제 내역,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와 질문사항 등 모든 기초자료 시스템 상 일괄제공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시 시스템 상 분산된 정보수집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 •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점검자료 수준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상 한 화면에 현장점검 시 필요한 모든 자료제공 및 조회 • 현장점검 형평성 및 효율성 증대

② 적극적인 공익제보 활성화

○ (문제점)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허위·부당 청구는 제보가 없으면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에 의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액수를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습니다.
- 또한 매년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를 독려하겠습니다.

- ▶ 전 화 : ☎ 1555-3232, 1600-4397(팩스), ☎ 02-6360-6799(신고전담전화)
- ▶ 인터넷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www.socialservice.or.kr)
- ▶ 대 면 : 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등

3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① 허위·부당 청구 제재부가금 부과

- (문제점) 제공기관(제공인력)의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어도 자격취소 외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부당청구 비용만 반납하면 되므로*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 바우처 카드결제 미숙, 관련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부당 청구된 비용 반납으로 종결
- (개선방안)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제공기관, 제공인력), 위반유형 및 횡수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형사고발 규정 마련

- (문제점)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어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임에도 지자체 등이 고발조치에 소극적이고, 지자체 별로 형평성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형사고발 대상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부정수급 등 제공기관 명단공표

- (문제점) 부정수급 제공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 규정이 없어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 (개선방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예방과 제재를 위해 제공기관 명단, 부정수급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단공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제공기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V. 향후계획

-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18.6월~)
-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18.8월~)

- ※ (붙임) 1.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2. 주요 적발사례
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현황

붙임 1

제도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과 제 명	추진방법	추진시한	비고
-------	------	------	----

1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① 공적자료 연계확대 및 온라인 심사 도입	시스템 고도화	'19. 상	복지부 정보원
② 이상결제 탐지 제고를 위한 지리정보(GIS) 활용	시스템 고도화	'18. 하	정보원
③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고도화	'19. 상	복지부 정보원
④ 이상결제 방지를 위한 경고시스템 장착	시스템 고도화	'19. 상	정보원

2 현장점검 내실화와 공익제보 활성화

① 지자체 현장점검 내실화	시스템 고도화	'19. 상	정보원
② 적극적인 공익제보 활성화			
<②-1>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인상	시행령개정	'19. 하	복지부
<③-2> 집중 신고·홍보기간 운영	지침개정	정기	복지부 정보원

3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① 허위·부당 청구 제재부과금 부과	법개정	'19. 하	복지부
②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형사고발 규정마련	지침개정	'18. 하	복지부
③ 부정수급 기관 명단공표 도입	법개정	'19. 하	복지부

유 형	적발사례
<p>허위·초과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이○○은 이용자 배◇◇, 강□□, 민△△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결제로 총 838건, 금액 26,173천 원 허위결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박○○은 이용자 조◇◇에게 '15. 9. 11. ~ '18. 3. 23.까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초과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916건, 금액 18,485천 원 허위결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제공인력 곽○○은 이용자 김◇◇와 '16. 5월 계약 후 한 달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 '16. 6. 3. ~ '18. 4. 24.까지 서비스 제공 없이 총 674건, 금액 14,925천 원 허위결제
<p>미등록·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맘"은 '18. 1. 5. ~ 2. 28.까지 미등록된 제공기관 제공인력 고△△ 외 2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 지급받은 비용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미등록된 기관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409건, 금액 20,244천 원 허위결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제공기관 "○○○○감"은 등록되지 않은 제공인력 박△△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는 실제 등록된 박□□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7. 10. 10. ~ '18. 2. 9.까지 총 457건, 금액 17,064천 원 허위결제
<p>바우처 이용제한자의 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우○○ 외 11명은 '17. 1. 31. ~ '18. 1. 15.까지 바우처/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하여 총 38건 1,121천 원 중복결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권○○은 이용자 사망 후 총 12건 금액 392천 원 허위결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김○○ 외 16명은 이용자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총 21건 금액 927천 원 허위결제
<p>제공인력 간 담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인 김○○와 이◇◇은 이용자인 서로의 자녀 바우처 카드를 바꿔 소지하면서 실제 서비스 시간 제공 없이 '15. 2. 6. ~ '18. 3. 13.까지 총 616건, 금액 23,541천 원 허위결제 <p>※ 가족 돌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지원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신청에 의해 가능하고, 바우처는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하여 생성하도록 규정</p>

□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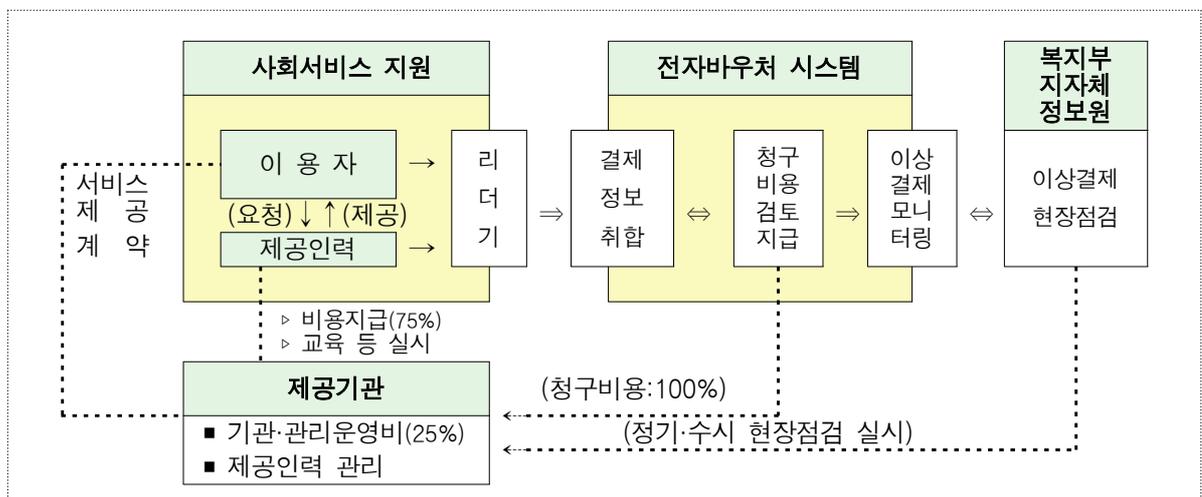
-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은 '17년 기준 1조 5,359억원 규모로 국가에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30%(서울시 50% 등) 보조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용자	(명)	718,682	652,719	527,744	605,160	583,263
결제액	(억원)	9,954	11,770	11,867	14,379	15,359
제공기관	(개소)	7,414	8,850	9,836	11,208	12,437
제공인력	(명)	169,562	173,777	164,737	180,915	194,201

자료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자료(2018. 4.)

□ **운영체계**

- 바우처 청구비용은 이용자가 제공인력이 소지한 전용단말기(결제단말기, 스마트폰 포함)를 통해 결제한 바우처 카드결제 내역에 따라 지급
- 지자체로부터 제공비용을 예탁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카드결제가 확인*되면 청구비용 지급
- * 이용자가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에 바우처 카드로 체크한 시간을 해당 서비스별 단가 등으로 환산한 비용을 제공기관에 지급



□ 서비스별 대상 및 지급기준

(‘17년 기준)

구 분		대 상 자	서비스내용 및 정부지원금
①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소득 150%이하 •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 • 방문 최대 9,800원/시간, 월 27, 36시간 • 주간보호 29,400원/일, 월 9, 12시간
	노인단기 가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소득 150%이하 • 65세 이상 • 중증수술로 단기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활동 및 일상가사 지원 • 회당 19,600원(2시간 기본) • 월 48시간 최대 2개월간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 대상자 중 치매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서비스 외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 최대 36,380원/일, 연간 6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 • 중위소득 8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 출산일+60일까지 5~25일간 • 유형별로 278천원~1,891천원
	③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 (인터넷 과몰입 치유, 자살 위험군 예방, 다문화 아동 지원, 비만아동 건강관리, 치매환자 가족여행 등) • 사업별로 월15,000~225,000원, 1~20회
	④ 가사간병 방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미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등 간병·가사지원 등 • 최대 10,200원/시간, 월 24, 27시간
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65세 미만 • 1~3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최대 9,800원/시간, 월 10~273시간
	시·도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65세 미만 • 1~6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최대 9,800원/시간, 월 10~868시간
장애아동 가족지원	⑥ 발달재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소득 150%이하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재활치료 • 월 14~22만원(월8회, 주2회, 회당50분)
	⑦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소득 100%이하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 언어발달서비스 • 월 16~22만원(월8회, 주2회, 회당50분)
발달장애인 지원	⑧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소득 150%이하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 및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 12개월간 16만원 (월3~4회 이상, 회당50~100분)